

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7의2] <신설 2024. 11. 29.>

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(제31조의3제3항 관련)

종류	교육 대상	교육 이수시간 (회당)
1. 공무원전문교육	가.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나.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 제48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. 지방자치단체에서 법,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	21시간 이상
2.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전문교육	가. 영 별표 1 제1호1), 3) 및 4)에 따른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(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의 직원 중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	14시간 이상
	나. 가목에 따른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 외의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의 직원 중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	2시간 이상
3. 운행제한단속원전문교육	「도로법」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	14시간 이상